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
2. 건명 :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불임참조
4. 검토의견 : 불임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회계공무원을 행정기구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6조는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복지여성국장과 복지정책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공무원을 명확화 그리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